

# KB 스타뱅킹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약관

# 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KB스타뱅킹 간편송금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하는 고객과 KB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 간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,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- 1. "간편송금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"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KB국민은행이 이용자에게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  - 2.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(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)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(전자화폐 제외). 간편송금에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계좌와 연결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200만원을 준용합니다.
  - 3. "간편송금 이용자(이하 "이용자"라 합니다)"란 간편송금 서비스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은행과 계약 체결 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  - 4. "간편송금 머니"란 서비스 이용 채널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된 금액을 말합니다.
  - 5. "휴대전화 본인인증"이란 본인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간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합니다.
  - 6. "간편비밀번호"란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말합니다.
  - 7. "이용매체"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  - 8. "이용계좌"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본인명의의 KB국민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합니다.
  - 9. "송금"이란 이용자가 본인의 간편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연결된 이용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이체를 의미합니다.
  - 10. "계좌조회"란 이용계좌로 등록한 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
- 11. "송금인"이란 출금을 통하여 송금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12. "수취인"이란 송금된 자금을 입금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제3조(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)

- 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- 1. 선불전자지급수단 개설•해지
  - 2. 이용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
  - 3. 송금 관련 서비스
  - 4. 그 외 은행이 정하는 서비스
- ② 은행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서비스의 변경•추가•중단 내용을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.

## 제4조(서비스 이용대상)

- ① 본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 가입된 개인 뱅킹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②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이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해당 사항은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
## 제5조(이용신청 및 승낙)

- ① 서비스 채널에서 서비스 이용신청 시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및 휴대전화를 활용한 본인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등록 할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은행은 이를 승낙하기 위해 입력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하고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은행은 이를 승낙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#### 제6조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)

-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1.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.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  - 2. 신청자가 입력한 기재내용에 허위, 누락, 오기 등이 있는 경우
  - 3. 신청자가 입력한 명의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
  - 4. 이미 가입된 이용자가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
  - 5.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
  - 6. 법인,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명의,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
  - 7.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법령, 이용약관에서 정한 신청



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

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가입 승인을 제한하는 경우, 앱 내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 제7조(송금)

- ① 이용자는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간편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연결된 이용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송금 시 은행이 요구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,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은행의 귀 책사유가 있을 경우,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
- ③ 이용자가 송금금액, 수취은행,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제3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치합니다.

## 제8조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②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2주 이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## 제9조(이용한도)

-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통합 이용한도(1회, 1일)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 한도 금액(200만원)을 따르며 월 이용한도의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.
- ② 은행은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앱, SMS, E-Mail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.
- ③ 은행은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,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하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서비스 이용 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

#### 제10조(제휴업체 이용)

① 이용자는 서비스 제휴업체에서 간편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② 이용자가 환불, 취소 등을 원할 경우 제휴업체와 합의하여 진행하며, 거래 정책은 제휴업체의 정책에 따릅니다. 해당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제휴업체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이용자와 합의한 방식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.
- ③ 거래 환불, 취소 정책은 제휴업체의 고유의 정책으로 제휴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정책은 제휴업체를 통해 안내합니다.

## 제11조(간편송금 머니 환급)

- ① 이용자는 간편송금 머니 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 간편송금 머니 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.
  - 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간편송금 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- 2. 간편송금 머니의 결함으로 제휴업체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  - 3. 이용자가 간편송금 머니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

## 제12조(서비스 이용의 제한)

-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용제한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- 1. 간편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
  - 2. 1일/1회 이용한도를 초과한 경우
  - 3. 스마트폰 등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
  - 4. 이용계좌에 대하여 잔액부족, 사고신고, 법적 지급제한, 잔액증명서 발급, 압류,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록 등의 사유로 전자금융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
  - 5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  - 6.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, 부정사용,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
  - 7.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
  - 8.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
  - 9.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② 은행은 전항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며, 이용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.

## 제13조(서비스 중단)



-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서비스 장비의 보수, 업그레이드, 점검, 교체, 고장, 통신장애,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
  - 2.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
  - 3. 스마트폰 등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
  - 4. 정전, 천재지변, 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## 제14조(해지)

- 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- 1.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
  - 2. 다른 회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
  - 3.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
  - 4.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③ 은행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하며, 이용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15조(은행의 의무)

-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용자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.

## 제16조(이용자의 의무)

- ① 이용자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하고,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관련 법규 및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은행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



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 이를 위반한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이용자는 간편비밀번호를 포함한 본인 인증번호 및 접근매체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.

## 제17조(사고•장애시의 처리)

- ① 고객은 거래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의 도난·분실·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④ 은행은 통신장에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고객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⑤ 은행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18조(손해배상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-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 -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 -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·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  - 1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 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
  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



거나 방치한 경우

- 3.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4.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  -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- ⑤ 이 약관의 내용 중「전자금융거래법」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.

## 제19조(약관의 명시•교부•설명)

-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.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.
  - 1.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
  - 2.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

#### 제20조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"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



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# 제21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-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 법령과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또는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 등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22조(관할법원)

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,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# 제23조(준거법)

이 약관의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부 칙(2025.05.22)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